

#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 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 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 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 일반국도 · 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 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 이라 함은 순수 주거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 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제설·제빙” 이라 함은 보도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 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 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 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시도는 별지와 같다.

1.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1.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6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제7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재난관리과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담당·팀장 직위·성명	재난관리담당 김용배
	담당자 성명·전화	오동원 (481-2119)

[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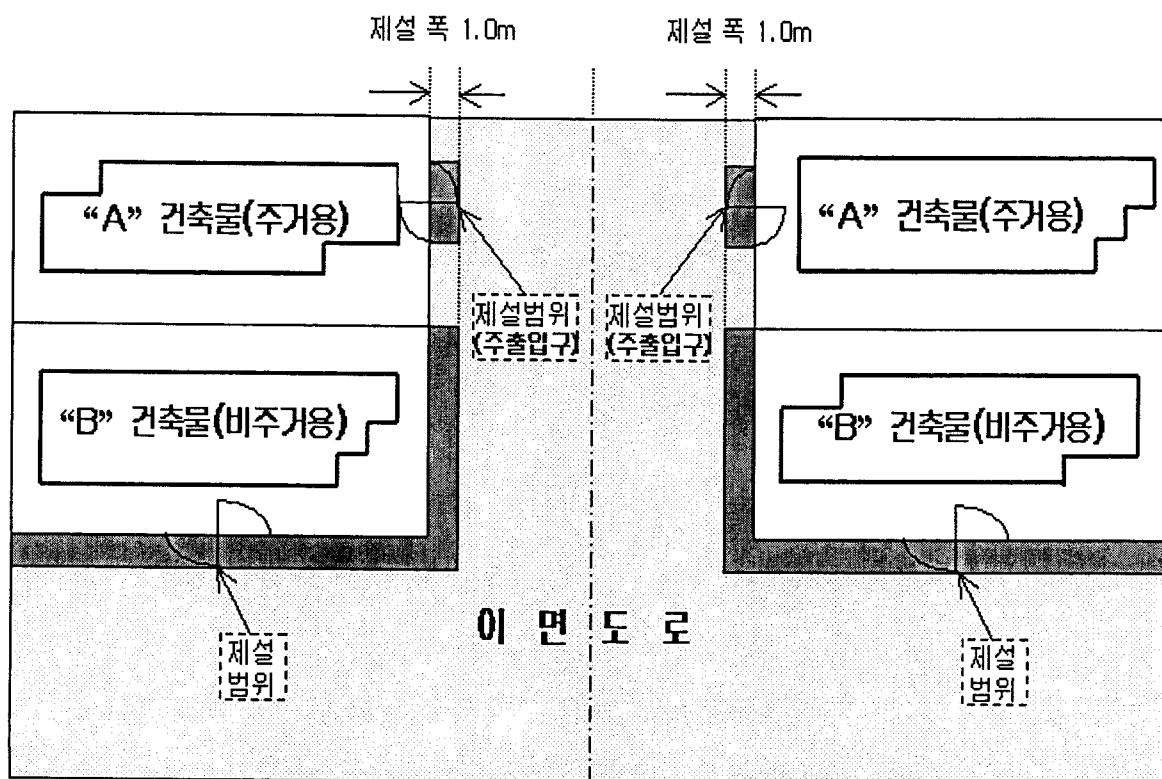
## 제설·제빙 책임범위 예시도

### □ 보도의 제설 · 제빙 책임범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보도 전쪽)

###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 · 제빙 책임범위

-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507
------------	------

제안년월일 : 2006. 11. 15.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장

## 수정이유

- 건축물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자기집, 자기상가 앞에 대한 제설·제빙을 함에 있어 그 범위와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일정한 구역과 시간을 정하는 것보다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행로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함.

## 주요골자

- 제설·제빙의 범위와 시기 및 방법에 있어서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수정함. (안 제4조 내지 제6조)

#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중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시도는 별지와 같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동조제1호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을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행로 확보”로 한다.

그리고 동조제2호가목중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을 “부분으로부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행로 확보”로 하고, 동조제2호나목중 “1미터까지의 구간”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행로 확보”로 한다.

제5조중 “다음 각 호와 같이”를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으로 하고, 동조 단서 및 제1호 내지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중 “보행자나 차량의”를 “보행자의”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를 삭제하며, 동조 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한다.

## 조문대비표

원 안	수정안
<p>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u>같으며</u>, 예시도는 별지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보도</u>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li> <li>2. (생략)</li> <li>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까지의 구간</li> <li>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u>1미터까지</u>의 구간</li> </ol> <p>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u>다음 각 호와 같이</u> 제설·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u>이내</u></li> <li>2.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li> </ol> <p>제6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u>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u>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u>다음 각 호와 같이</u>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보도의 눈이나 얼음</u>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li> <li>2. <u>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u> :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기다.</li> <li>3. <u>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u></li> </ol>	<p>제4조(제설·제빙범위) -----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보도</u>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의 <u>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행로 확보</u></li> <li>2. (원안과 같음)</li> <li>가. ----- 부분으로부터 <u>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행로 확보</u></li> <li>나. ----- <u>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행로 확보</u></li> </ol> <p>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u>보행에 지장이 없도록</u> 제설·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lt;단서삭제&gt;</u></p> <p style="text-align: right;">&lt;삭 제&gt;</p> <p style="text-align: right;">&lt;삭 제&gt;</p> <p>제6조(제설·제빙방법) ----- <u>보행자</u>의 -----</p> <p style="text-align: right;">-----&lt;삭 제&gt;</p> <p>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lt;삭 제&gt;</p> <p style="text-align: right;">&lt;삭 제&gt;</p> <p style="text-align: right;">&lt;삭 제&gt;</p>